

의안번호	2200504
의 퇴 인	박홍배 의원
회 답 일	2024. 7. 1.
추계번호	24B0900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기상청장이 5년마다 기상관측의 표준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억 1,100만원으로 추계(연평균 1억 2,200만원)

[표 1]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실시(A)	60	—	—	—	—	60	12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실시 관련 신규인력 1인 고용(B)	111	107	110	111	112	551	110
합계(A+B)	171	107	110	111	112	611	122

주 1. 기상청의 의견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신규 인력 1인(6급 상당)을 고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용역비 단가 및 인건비·기본경비 편성액 변동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의2(기상관측의 표준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신설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상관측의 표준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0조에 따른 기상관측 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1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기상측기 등 기상관측장비 규격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방식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기상청 및 관측기관 등 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사항 기상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고,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함(제5항)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4조의2(기상관측의 표준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신설	○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 기간 및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공무원 기관부담금 요율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기상관측의 표준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기상청장이 5년마다 기상관측의 표준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므로, 추계기간 중 첫 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기상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실시 사례를 참고하면, 기상관측의 표준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공무원 기관부담금 요율
(2023년 11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4	2.2	2.2	2.1	2.1	2.1	2.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1.3	1.3	1.3	1.3	1.3	1.3	1.3
공무원 기관부담금 요율	13.004	13.114	13.210	13.305	13.399	13.494	13.584

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000만원(연평균 1,200만원)으로 추계

[표 2] 기상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관련 법령명	연구용역명	연구용역비	수행 기간
「기상법」 제5조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4,450만원	'22.6.15. ~10.31.
「기상산업진흥법」 제4조	제3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21~'25) 수립 연구 추진	9,570만원	'20.4.13. ~12.9.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차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	4,900만원	'21.5.10. ~10.9.
	지진·지진해일·화산업무 발전계획 연구	6,580만원	'15.5.8. ~10.5.
평 균		6,380만원	—

자료: 기상청

[표 3]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정책용역비	60	—	—	—	—	60	12

주: 정책용역 단가 변동에 따라 추계액은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안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상청에서는 현행법 제8조에 따라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기상청 내 담당 부서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고, 개정안 시행 시 매년 시행계획도 기상청 내 담당 부서에서 수립할 예정이어서 별도의 연구용역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 또한, 기상청에 따르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의 새로운 업무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규 인력 1인이 필요하다는 입장
 - 기상관측의 표준화 기본·시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실적 점검(3h)
 - 기본계획 등 기상관측 표준화 관련 사업 관리·감독(2h)

- 기상관측기준 변경 관련 업무(2h)
: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관측환경, 통신 체계 변경 등 기상관측기준 재정립 등
- 기상관측의 표준화 대내외 기관과의 협력(1h)
: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 표준화 기준 변경 등 필요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

[표 4] 필요인력 산출 내역

업 무 명	업무내용	신규 업무 수행시 소요 시간
계	-	2,000h
기상관측의 표준화 중장기 계획 수립	·기상관측의 표준화 기본시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실적 점검	·3h×250일=750h
	·기본계획 등 기상관측 표준화 관련 사업 관리·감독	·2h×250일=500h
	·기상관측기준 변경 관련 업무	·2h×250일=500h
	·기상관측의 표준화 대내외 기관과의 협력	·1h×250일=250h

자료: 기상청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1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억 5,100만원(연평균 1억 1,000만원)으로 추계
 - (인건비) 기상청의 6급 평균 연봉(2024년 기준 8,159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적용
 - (기관부담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인건비 대비 공무원 기관부담금 요율 적용
 - (기본경비) 기상청의 2024년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²⁾ 비율(13.4%)을 적용하여 추계
 - (자산취득비) PC·사무집기 등 1인당 자산취득비는 2026년 기준 500만원³⁾으로 2026년에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가정
 - 사무실 임차료는 기존의 기상청 유휴 공간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2024년 예산 기준, 인건비는 109,080백만원, 경상운영비는 14,578백만원 규모 (자료: 기상청)

3)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2020. 6.)」에 따라 2020년 기준 정부기관 직원 1인당 자산취득비 419.7만원에 연도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5] 직원 1인 신규 채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인건비(A)	84	85	86	87	88	430	86
기관부담금(B)	11	11	12	12	12	58	12
기본경비(C)	11	11	12	12	12	58	12
자산취득비(D)	5	-	-	-	-	5	1
합 계(A+B+C+D)	111	107	110	111	112	551	110

주: 실제 공무원 연봉상승률, 기본경비 편성액 등의 변동에 따라 추계액은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기상청의 의견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신규 인력 1인(6급 상당)을 고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기본계획 수립 정책용역비 단가 및 인건비·기본경비 편성액 변동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